

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「변호사법」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변호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「행정사법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(행정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</li><li>2.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3. 출입증을 발급받을 대행기관 대표 및 소속 직원의 신분증 사본</li>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사업자등록증</li><li>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합니다)</li></ol>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